DOI: https://doi.org/10.22962/tnirvw.2023.13.2.002

T&I REVIEW
December 2023. Vol. 13. No. 2.

제도 법률번역 아웃소싱 품질보증 방안에 대한 고찰

– 입찰명세서 분석을 중심으로 –

유정주*

Jeongju Yoo (2023). Quality assurance in outsourced institutional legal translation: A focus on tender specifications within Korean governmental entities. *This study examines quality assurance practices in Korean legal translation institutions with the aim to propose potential improvements. It focuses on tender specifications as a basis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TQA) in outsourced translations, fulfilling the role of translation briefs within these institutions. With this objective,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outsourcing quality assurance policies and practices from the DGT and the CJEU, two world-renowned legal translation institutions, with an emphasis on their most recent tender specifications for outsourced translations.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the selection criteria for tenders, including linguistic, technical, and professional requirements, along with award criteria detailed in the specifications. Subsequently, the latest tender specifications from five Korean legal translation institutions were analyzed based on these selection and award criteria. The findings were then juxtaposed with those of EU translation institutions to draw comparative insights. (Handong Global University, Korea)*

Keywords: Legal translation, institutional translation, outsourcing, quality assurance, tender specifications

주제어: 법률번역, 제도번역, 외주번역, 품질보증, 입찰명세서

---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1284).

** 한동대학교 공익법센터, 위촉연구원

1. 연구의 배경

‘제도 법률번역(institutional legal translation)’은 제도번역과 법률번역의 합성어로, 구체적 제도로서의 ‘번역기관(translating institution)’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률 텍스트의 번역을 말한다. 번역을 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번역기관은 초국적기구, 상업조직,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등 다양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 제도 법률번역은 정부의 통치기능 가운데 ‘규제(regulation)’ 기능의 일환으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서의 법률번역을 의미한다(유정주 2023a: 42-44). 이는 제도번역의 정의를 번역이 이루어지는 환경보다는 ‘해당 제도(기관) 내에서 번역이 이루어지는 목적’의 관점에서 정의해야 한다는 코스키넨(Koskinen 2014)의 관점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제도 법률번역의 목적을 정부의 통치기능에서 파생된 공공성에 둘 경우, 제도 법률번역과 관련한 논의의 핵심은 공공성 달성을 위한 해당 번역의 품질 보장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제도 법률번역에서 품질 보장은 시민(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텍스트의 법적 명확성을 보장해야 하는 기관의 의무이자 요건으로 간주된다(Sosoni 2011: 83).

그러나 제도 법률번역에서 품질은 전통적인 충실성(fidelity) 패러다임에 갇힌 고정된 객체가 아니라 투입된 예산의 비용효율성과 관련한 합목적성 달성 맥락에서 논의되며, 공공행정의 핵심 목표인 ‘do more with less’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례로, 세계 최대의 번역기관으로 24개 공식언어로 EU 법령을 번역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번역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DGT)의 경우에도, 가용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용효율성(cost-efficiency)임을 천명한 바 있다.[1] 또한 모든 번역에 동일한 비용을 투입하여 ‘충실한’ 번역을 산출하는 대신, 번역목적과 명세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공정별 균형을 잡는 일을 품질보장 접근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Strandvik 2018: 56, 60).

이렇게 EU 번역기관들이 기존의 품질에 대한 정의를 합목적성 관점으로 수정하면서, 기존에 기관 내부에서 번역하던 문서들을 텍스트의 목적과 관련 리스크

1) DGT의 경우 지난 20년간 인하우스 번역가 수의 50%를 감축했으나, EU 회원국 확대로 공식 언어가 증가하면서 총 번역가 수는 2017년 기준으로 1,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Strandvik 2017: 124).

평가에 따라 아웃소싱[2]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DGT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연간 2백만 페이지 이상의 물량 가운데 1/3가량을 외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중요도가 낮은 문서들만 아웃소싱하던 초기와 달리 현재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까지 외주로 번역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3](Strandvik 2018: 52). EU 회원국 시민들에게 구속력있는 선례로 기능하는 법원(source of law)인 EU 판례법을 번역 제공하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경우에도, 긴급한 마감 기한과 내부 작업량 폭주로 인해 재판소의 절차 관련 문서들을 외주로 번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Koźbiał 2017: 166). EU 번역기관들에 비해 훨씬 적은 예산 하에 소규모로 운영되는 한국 법률번역 기관들의 경우, 외주번역 의존도는 절대적인 수준이다. 조약에 대한 정본번역을 제공하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법령의 영어와 중국어 번역을 제공하는 한국법제연구원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내부에는 최소한의 관리인력만 두고 외주번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주번역 역시 번역기관이 해당 번역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제도번역의 일부이며, 결과물 품질이 낮을 경우 내부에서 진행한 번역과 동일한 리스크가 발생한다(Svoboda 2017: 82). 게다가 제도 법률번역의 경우 저품질 번역은 단순히 해당 번역의 사용 가능성(usability)을 훼손하여 해당 기관에 물적 손해를 입히는 수준을 넘어서, 분쟁을 초래하거나 법적 명확성을 해치게 되어 공공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현대의 공공행정에서 비용효율성이 지상 명제이긴 하지만, 제도 법률번역의 경우 법적, 정치적 이유 및 기관의 명성 유지 차원에서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비용효율성은 유의미할 수 없다(Strandvik 2018: 61).

이로 인해 EU 번역기관들의 경우, 법률번역의 외주번역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QA) 모델을 마련하여, 외주번역 프로세스 전체에 대한 종합적 품질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품질보증은 ISO 17100:2015와 같은 산업표준을

---

2) 아웃소싱(outsourcing)은 '인하우스 기반의 인력이 아닌 외부의 공급자로부터 의뢰인(client)에게 서비스를 조달하는 행위'로(Scott 2019: 5), EU 번역기관들의 경우 'outsourcing'과 'external translation'을 혼용한다. 본고의 경우 아웃소싱과 외주번역을 문맥에 따라 혼용하였다.

3) 법률 분야의 외주번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스콧(2019: 133)에 따르면, 일반의 예상과 달리 (주로 민간의) 법률번역 의뢰인들은 단순한 정보 목적이나 형식상 요건을 맞추기 위한 번역,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번역보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단어 하나, 구두점 하나까지 중요한 번역을 주로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번역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해 번역기관에 도입된 개념으로, 작업공정, 인적 자원, 도구 자원과 같은 과정품질 하위요소의 체계적 관리에 중점을 둔 기관의 서비스 제공 품질을 일컫는다(유정주 2023b). 외주번역의 경우, 품질보증은 '완료된 작업이 해당 명세에 규정된 품질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contractor)가 실행하는 일련의 절차'로 정의되며(DGT 2023b: 4), 추가적인 내부 작업 없이 즉각 공개(publication) 또는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번역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일체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본고는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차지하는 외주번역에 대한 기관의 품질보증 모델 수립을 돕기 위한 기초 연구로 기능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한국 법률번역 기관들의 외주번역 관행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며, 기관의 핵심 품질요건을 규정한 번역명세 역할을 수행하는 입찰명세서(tender specifications)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번역브리프 역할을 하는 명세서는 ISO 17100:2015 등 대부분의 산업 표준에서 '번역 목적'과 함께 번역 선택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품질의 핵심 요소로 지적된다(Strandvik 2017: 130). 이에 본고는 EU 법률번역 기관들의 외주번역 관련 품질보증 사례를 최신 입찰명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한국 번역기관들의 외주번역 입찰명세서와 비교하여 개선 사항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EU 번역기관 아웃소싱 품질보증 사례 분석

2.1. 법률번역 아웃소싱 품질보증 정책

2.1.1. 아웃소싱 품질 요건

EU의 제도 법률번역은 EU의 언어평등권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수단이다. 특히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본인 법령이나 판례의 번역은 최종사용자인 EU 시민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회원국의 법원과 기관들의 해석 및 적용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번역품질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4]그러나

4) 2023년 현재 EU 1차, 2차 입법의 모든 문서 24개 공식언어로 번역되고 있으며, 법령의 경우 24개 모든 언어본이 정본이지만, 판례법의 경우 모든 공식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것은 아니다. CJEU의 경우 중계어(pivot language)는 불어이며, 모든 절차 관련 문서나 소답, 판결문 등은 불어로 번역되어야 한다(Koźbiał 2017: 158).

이러한 품질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EU 번역기관들은 공공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상시적 요구에 직면하여,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를 제외한 모든 기관들이 상당한 분량의 번역 수요를 아웃소싱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기관들의 번역 인력 감축과 조직 축소가 본격화되고, 업무량 증감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외주번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Sirovec 2020: 196). DGT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29%이던 외주번역 비율이 2022년 현재 37%까지 증가했으며(DGT 2023c), 외주번역을 예측 불가능한 수요 폭증을 관리하고 인력 감축을 보완하기 위한 유연한 자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천명한 상태다(DGT 2023a: 6). 600명이 넘는 법률언어전문가들(lawyer linguists)이 EU 판례법을 번역하는 CJEU의 경우에도,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번역의 1/3 가량을 아웃소싱으로 처리하고 있다[5].

비용효율성 문제로 향후 아웃소싱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임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EU 번역기관들은 인하우스 번역가 대신 상업 에이전시가 조달조건(procurement conditions)에 따라 번역할 경우에도 내부에서 번역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 기관들은 아웃소싱 품질보증 절차의 핵심을, 인하우스 번역가와 외주번역가의 정보격차 해소와, 일관성있고 상세한 피드백을 통한 외주계약자들과의 소통 향상에 두고 있다(Sirovec 2020: 201). 이를 위해 EU 기관 및 부서 명칭, 용어 데이터베이스, 기관 간 스타일 가이드, 언어별 번역 지침 등을 한데 모아 외주번역 계약자들을 위한 원스톱 종합 참고사이트를 마련하고, 각 지침과 명세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특히 법률번역 품질보증의 경우, 일반 번역에서 요구되는 비용효율성 달성을 위한 절차별 모델 접근법도 중요하지만, 법률텍스트의 특수성을 반영한 엄격한 품질요건의 준수가 요구된다. 이로 인해 DGT와 CJEU를 중심으로 한 EU 번역기관들의 법률번역 아웃소싱 품질보증 정책의 핵심으로 다음과 같은 품질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입찰공고, 입찰명세서 및 계약자와 체결하는 기본계약(Framework Contract, FWC[6]), 아웃소싱 품질 가이드 등을 통해 공식화하고 있다.

먼저, DGT의 2023년 외주번역 입찰명세서(DGT 2023b)에 제시된 법률문서를

5) 아웃소싱되는 텍스트는 CJEU에 제기된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주제를 다루며, 각종 절차 문서, 소송대리인 의견서, 판결서, 명령서 등 다양한 텍스트 유형을 망라한다(CJEU 2023a: 7).

6) 계약기관(contracting authority)과 계약자(contractor) 간에 체결되는 기본계약으로, 가격 및 작업량 등과 관련하여 특정 기간에 체결될 계약이나 발주서(order form)에 적용되는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DGT 2023b: 4).

포함한 모든 텍스트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품질 요건과, 법률문서 외주번역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품질 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7]. DGT 입찰명세서는 외주번역으로 납품된 작업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usable as it stands) 계약자가 준수해야 할 언어적, 기술적 품질 요건 및 IT 역량, 전문인력 역량을 상세히 규정한다(표 1 참조). 먼저, 언어적 품질 요건으로는 ST 내용 및 인용의 정확성, 용어 일관성, TL 언어규범 준수, 가독성 등 스타일 요건 준수 등이 규정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텍스트 차원의 품질인 '결과물(product)'로서의 번역품질에 해당하며, 법률번역을 포함한 EU 번역의 모든 품질지표가 '정확성', '일관성', '명확성'으로 수렴된다는 비엘(Biel 2017: 35)의 분석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아웃소싱의 기술적 차원의 품질 요건으로는 마감 기한 및 디자인 요건 준수, ST 서식 준수, Word 파일과 번역메모리, SDLXLIFF[8] 파일 간 내용 일치 등이, 주요 IT 역량 요건으로는 DGT 내부의 CAT 툴 파일 형식 처리 능력 및 향후 도입 예정인 기타 소프트웨어나 툴 사용 능력이 규정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디지털전략(C(2018)7118)에 따라 DGT가 모든 작업공정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목표로 하면서, 번역메모리(Euramis-NG), 용어 데이터베이스(IATE 2), CAT 툴(CATE-NG) 등 DGT의 차세대 디지털도구자원의 사용 능력을 아웃소싱의 IT 품질 요건으로 명시한 것이다. 특히, 주요 IT 역량 요건으로 DGT의 용어 데이터베이스 파일 형식에 따라 최종본의 주요 용어에 대한 용어집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웃소싱으로 생산된 번역의 경우에도 내부의 유효성 인증을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용어들을 누락 없이 탑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는 용어 일관성과 신뢰성이 핵심적인 결과물 품질지표가 되는 법률번역의 경우 특히 중요한 품질보증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DGT 입찰명세서는 외주번역 작업에 참여하는 번역가, 감수자 등 전문인력의 역량과 관련하여, 산업표준인 ISO 17100:2015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추도

7) DGT의 경우 아웃소싱 계약자에게 법률문서 외에도 정책 및 행정 문서, 시민들을 위한 정보제공 문서 등 다양한 텍스트유형을 의뢰하기 때문에, 입찰명세서상 규정된 품질 요건은 모든 텍스트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본고에서는 법률문서(Category A) 번역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품질요건을 살펴보기 위해 *Translation Quality Info Sheets for Contractors* (DGT 2017)의 법률번역 관련 내용을 같이 분석했다.

8) SDLXLIFF는 2023년 현재 DGT가 사용하고 있는 CAT 툴인 SDT Trados의 파일 확장자 형식이다. 그러나 2024년 완료를 목표로 Trados를 대체하여 번역참가자 간 실시간 협업기능이 강화되고 각종 도구자원이 통합된 서버기반 플랫폼인 CATE Next Generation이 구축되고 있어, 향후 관련 기술 요건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DGT의 주요 도구자원 개선 내용은 유정주(2023b: 117-119)를 참조할 수 있다.

록 규정하고, 입찰자별로 참여 인력의 50% 이상이 해당 자격에 부합한다는 진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품질코디네이터(PM)의 경우 DGT의 품질 관련 지시를 이행하고 기관의 품질 관련 의견을 번역가 또는 감수자에게 전달하는 핵심 인력으로, 원어민 수준의 TL 구사능력 및 품질보증 경력을 보유하도록 규정하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번역의 경우 2020년 별도의 국제표준인 ISO 20771:2020이 제정되어, 현재 ISO 17100의 인적 자원 요건보다 한층 강화된 요건이 권고되기 때문에(유정주 2023b: 105-107), 향후 DGT를 포함한 주요 법률번역기관들의 법률번역 아웃소싱 인력 요건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표 1. DGT의 외주번역 공통 품질요건

언어적 품질요건	1) ST의 내용을 부당한 생략이나 추가 없이 정확하게 제공, 2) 기존 문서에 대한 명시적, 암시적 인용의 정확성, 3) 관련 분야, 참조문서, 명명 관행에 부합하여 텍스트 전체에서 올바른 용어를 일관성있게 사용, 4) 문법, 구두점, 철자 등 TL 언어규범 준수, 5) 기관 및 문서별 스타일 요건(예: 스타일가이드, 문서 탬플릿, 언어부서별 지침에 명시된 요건) 준수, 6) 일반 스타일 요건(유창성, 가독성, 통일성, 대상 독자별 맞춤화) 준수
기술적 품질요건	1) 마감일(날짜 및 시간) 준수, 2) 디자인 및 프리젠테이션 요건(텍스트 및 단락 서식, 레이아웃, 그래픽요소, 마크업, 세그먼트 관련 요건) 준수, 3) (발주서에 다른 형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ST의 서식 준수, 4) Word파일과 번역메모리, SDLXLIFF 파일 납품을 포함하는 경우, 파일간 내용의 일치, 5) SDLXLIFF 파일구조의 변경이나 손상 금지
IT 역량	1) MS Office 2010 이상 파일 형식(docx, xlsx, pptx) 및 pdf, html, xhtml, xml, rtf, txt 또는 기타 일반적인 파일 형식의 문서 작업 능력, 2) ST와 TT를 포함하는 SDLXLIFF 로컬라이제이션 파일 및 이러한 파일 형식을 처리할 수 있는 CAT 도구 또는 편집기의 사용 능력 (TMX 1.4b 이상 파일 형식), 3) 최종본의 주요 용어가 포함된 용어 데이터베이스의 납품 능력 (TBX 1.0 이상 파일 형식), 4) DGT에서 지정한 세그먼트 규칙 사용 능력, 5) DGT가 사용하는 기계번역도구 산출물 사용 능력(FWC 이행중 DGT가 도입한 기타 소프트웨어나 CAT 툴 사용 능력 포함)
전문인력 역량	1) FWC를 이행하는 모든 번역가, 이중언어 감수자, 단일언어 감수자가 ISO 17100:2015에 명시된 전문 역량을 보유할 것, 2) 계약자의 품질코디네이터(PM)는 TL에 대한 원어민 수준의 숙련도를 보유하고, 납품되는 모든 작업이 품질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전반적 책임을 질 것

다음으로, 법률문서 외주번역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품질 요건으로, DGT의 텍스트유형 분류상 법적 효력을 갖는 정본인 법률문서(Category A)의 외주번역 품

질 요건을 살펴본다. DGT(2017)는 아웃소싱 품질가이드를 통해 정본 법률번역의 목적을 명시하고, 구속력을 갖는 해당 번역의 본질상 정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품질지표임을 명시한다. 특히, DGT의 법률문서 외주번역 품질 요건은 일관성 지표의 달성을 위한 요건을 주로 규정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표 2 참조). 법령을 비롯한 법률텍스트의 경우 신규 번역 요청의 대부분이 기존 텍스트에 근거하고 있거나 기존 텍스트와 관련된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 번역 시 기존 텍스트와의 용어 및 표현 일관성 준수 여부가 품질보장의 중요 요소가 된다(Drugan et al. 2018: 43). 이를 위해 DGT는 법령의 경우

표 2. DGT의 법률문서 외주번역 품질 요건

구분	법령(legal acts)	사법절차 및 조사 관련 문서
문서 (번역)의 목적	법적 효력이 있으며 권리와 의무, 적법한 기대를 창출. 수신자는 시민 또는 법원으로, 문서 내 정보의 신뢰성을 완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함	침해, 합병, 반독점, 반덤핑 사건 등의 법적 절차 및 조사에 사용되는 문서들로, 해당 절차의 결과는 구속력있는 법적 효력을 창출하며, 동 효력은 원문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번역에 좌우될 수 있음
작성 (번역) 지시사항	*Joint Practical Guide*, *Manual of Precedents*, *Interinstitutional Style Guide*, 번역메모리, *LegisWrite*, 언어별 스타일가이드의 작성규칙, 표현 및 탬플릿 준수. TT는 ST와 동일한 '문장 범위'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개하기 적합해야 함	*Interinstitutional Style Guide*, 번역메모리, *LegisWrite*, 언어별 스타일가이드 준수. 그 외의 편집지침은 *Essential guide to drafting Commission documents on EU competition law*를 따를 것. 동일 파일의 이전 단계에 사용된 표현, 인용 및 용어에 대한 일관성 준수
용어	해당 법령 내 용어일관성 (동의어사용이나 재구성 금지), 관련 법적 근거 및 기본법(들)과의 용어일관성 준수. 신규 용어 발생시 해당 DGT 언어부서의 메일함을 통해 알리고 처리 여부 상의	관련 법령(EU 및 회원국) 및 동일 파일의 이전 단계 문서들과 용어 및 구문 일관성 준수
인용	법령조항이나 법령명은 EurLex와 공신력있는 각국 법률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 인용 표시가 없는 간접인용은 오역되지 않도록 반드시 근거를 확인할 것	
특별 관심 사항	1. Eurlex 내 조약을 포함한 기본법과 기타 관련 법령 2. 텍스트 내·외부와의 용어 일관성(IATE) 3. 스타일가이드의 작성 지시사항 4. DGT가 업데이트하는 번역메모리 5. ST나 참고문서의 오류. 발견시 DGT의 해당 메일함을 통해 알릴 것	

해당 텍스트 내는 물론이고, 관련 법령이나 조약을 포함한 기본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강조하고, 사법절차 문서의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절차의 이전 단계에 사용된 표현이나 인용문과의 일관성 달성을 별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례집(Manual of Precedents), 번역메모리, 법률문서 스타일도구(Legiswrite),기관 간 스타일가이드(Interinstitutional Style Guide)등의 준수를 강조하여, 제도 법률번역의 일관성 보장의 핵심 도구인 '표준화'를 통한 기존 관행과의 일치를 도모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령의 경우 ST와 TT의 '문장 범위'의 동일성을 아웃소싱 지시사항으로 명시하여, 정본번역의 주요 요구사항인 '표면 차원의 유사성' 달성을 통한 제도적 통일성(Šarčević 2018: 10)을 보장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다음으로, EU 판례법 및 절차문서의 번역을 제공하는 CJEU의 2023년 입찰명세서와 기본계약상 명시된 외주번역 품질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CJEU의 경우 DGT에 비해 번역물량은 적지만[9], 외주번역을 요하는 대부분의 문서가 판결문을 포함한 사법절차 관련 법률문서라는 점에서 유용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CJEU는 입찰명세서상 품질 요건을, 주로 언어적 요건을 기술한 계약이행 조건과, 기술 및 IT 관련 요건을 기술한 장비 조건, 참여 인력 요건을 기술한 전문 역량으로 구분한다.

먼저, 계약이행 조건으로는 DGT의 경우와 동일하게, 납품되는 TT의 품질이 내부의 추가적 감수 및/또는 수정 없이 즉시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조건으로 법률번역의 주요 품질지표 중 정확성과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표 3>의 이행 조건 가운데 2)와 3)은 TL 법적 개념, 법률용어 및 표현 등의 올바른 사용을 요구하여 정확성 지표에 해당한다. 반면, 1)의 재판소 지침, 4)의 참조문서, 5)의 관련 법령 및 사법텍스트, 6) 법률 데이터베이스, 7) 재판소의 기수립 관행에 대한 준수는, 법률번역의 일관성 범주인 텍스트 내·외의 용어 일관성 및 각종 지침과 전례의 준수에 해당하여(유정주 2023a: 51), 일관성 지표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즉, DG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판례 및 사법절차 문서 번역의 경우, 법원의 동일한 해석 및 적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정확성과 일관성이 아웃소싱의 핵심 품질지표로 강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외주번역의 기술 및 IT 관련 품질요건으로는 재판소 근무일 기준 8시간[10]

9) 2016년 기준 CJEU의 번역서비스부(TS)가 1년간 번역한 분량은 약 1,160,000페이지이다(Koźbiał 2017: 159).

이내 작업 수락 여부 확인 요건과, MS Office 등 일반적인 문서 파일 작업 능력, ST 서식 준수 요건 외에, DGT와 마찬가지로 기관 내에서 CAT 툴로 1차 가공된 텍스트에 대한 처리 능력이 규정되고 있다. 이는 CJEU를 비롯한 EU 번역기관들이 CAT 툴 등 각종 디지털 도구자원을 제도 법률번역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 품질보증 요건으로 도입하고, 해당 요건을 외주번역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CJEU의 법률문서 외주번역 품질요건

계약이행 조건	FWC에 따라 제공되는 TT의 서비스 품질은 공개(publication)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다음 세부조건을 준수해야 함: 1) 재판소의 구체적인 지침 준수, 2) TL의 올바르고 엄격하며 정확한 사용, 3) TL 법률언어 전문성과 적절한 용어에 대한 엄격한 준수, 4) 참조문서(SL, TL)에 사용된 법률용어의 엄격한 준수, 5) 관련 법령 및/또는 사법텍스트의 엄격한 인용, 6) 필요한 법률 데이터베이스(EU 및 회원국)의 사용, 7)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기존 관행(Vade Mecum) 준수, 8) 발주서상 합의된 마감기한 준수
장비 조건	1) 재판소 근무일 기준 최대 8시간 이내에 특정 작업 배정 관련 수락 여부 확인 가능, 2) MS Office 2010 이상 파일 형식 및 기타 전자파일의 처리 능력, 3) ST의 서식 및 스타일 준수, 4) CAT 툴로 1차 가공된 텍스트에 대한 작업 능력, 3) 재판소의 내부 번역 메모리에서 취득한 ST와 TT가 모두 포함된 파일(XLIFF 형식 등)의 처리 능력
전문 역량	1) TL 국가의 대학 법학 학위나 이와 동등한 학위, 또는 TL 국가의 변호사 자격; 또는 기타 분야의 대학 학위나 이와 동등한 학위 **및** 2년 이상의 TL 방향 공문서 번역 경력, 2) TL 및 TL 법률용어에 대한 완전한 숙달, 3) SL에 대한 철저한 지식

마지막으로, 외주번역을 위한 전문인력 역량과 관련하여 CJEU는 DGT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DGT의 경우 ISO 17100:2015에 명시된 인력 자격요건을 준용하지만, CJEU는 내부의 법률언어전문가[11]와 외주번역가 요건을 1) 모국에서의 법학 학위, 2) 모국어 외에 최소 2개 공식언어에 대한 완벽한 유창성, 3) 비교법 작업에 능숙하고 모국어로 법률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자로 원칙상

10) DGT의 경우 최고 순위 계약자는 3시간 이내에 작업 수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락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계약자에게 작업이 제안된다(DGT 2023b: 12).

11) CJEU의 경우 번역가가 아닌 내부의 법률언어전문가(laywer-linguist)가 번역 및 감수를 담당한다.

동일하게 설정한다(Koźbiał 2017: 164). 2023년 입찰계약 공고에 명시된 전문 역량 요건을 살펴보면 TL 국가에서의 법학 학위 또는 변호사 자격 취득자이거나, 기타 분야 학위 취득자일 경우 2년 이상의 공문서(official texts) 번역 경력을 갖추고, SL과 TL 및 TL 법률용어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춘 자로 명시되어 있다. 즉, 기본적으로 법학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 또는 공문서에 대한 공식번역(official translation) 경력을 보유한 자[12]가 외주번역 및 감수를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제정된 법률번역 산업표준인 ISO 20771의 인적자원 자격요건의 법률번역가 및 이중언어 감수자, 단일언어 감수자 요건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며(유정주 2023b: 106), 법률번역 아웃소싱의 경우 일반 분야의 외주번역에 비해 엄격한 자격을 갖춘 인력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1.2. 아웃소싱 평가 방법

이제부터는 제도 법률번역 아웃소싱 품질보증 정책에서 품질 요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는 외주번역의 평가 및 검증 방법을, DGT와 CJEU의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입찰명세서상 제시된 입찰자 평가 방법인 낙찰 기준은 아래에서 별도 항목으로 다루기로 한다.

DGT는 외주번역을 위한 입찰을 매년 진행하는 대신, 2년의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4년마다 새로운 입찰을 실시한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번역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번역이 필요한 문서의 종류는 미리 정하되, 납품 시기와 물량은 유동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DGT 2023c). 선정된 계약자의 외주번역은 납품 시 10% 분량[13]을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매월 DGT의 인하우스 번역가에 의해 입찰명세서상 품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기본적인 품질 요건은 입찰명세서상 기재 사항과 동일하나, 보다 구체적인 언어적 품질 요건과 관련한 내부 평가표(quality grid)는 <표 4>와 같이 구성된다(Drugan et al. 2018: 59).

평가표는 품질지표 중 '정확성' 관련 요건으로 오역이나 추가, 누락 금지를, '일

12) EU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공문서 번역을 주로 법원이나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인증법률번역가(authorized legal translator)가 담당하므로, 상기 요건은 인증 법률번역가 관련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3) 10% 샘플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품질관리(이중언어 또는 단일언어 감수)에 대한 의사결정은 해당 번역의 종류와 목적, 관련 리스크 평가에 기해 이루어지며, 법령 정본번역의 경우 외주번역된 문서 전체에 대해 내부에서 추가적인 이중언어 감수를 실시한다(Strandvik 2017: 133).

관성' 요건으로 관련 참고자료 및 내부 지침에 따른 용어 사용을, '명확성' 요건으로 문법이나 구두점, 어역 및 텍스트유형 관습 준수를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평가항목인 각 오류 유형에 대해서는 8개로 구분된 오류 코드를 부여하고, 식별된 오류는 중요도에 따라 '낮은 관련성(low relevance)' 또는 '높은 관련성(high relevance)[14]'으로 구분한다. 오류 및 관련성 부여는 언어 부서별 검증자(validator)의 확인을 거쳐,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언어적 품질 요건 외에도, 합의된 납품기한 준수 및 코드, 태그 등 ST의 포맷 준수, DGT 지시사항 준수 등 기술적 요건도 함께 평가하여, 미준수 시 별도 패널티를 부여한다(Strandvik 2017: 125).

표 4. DGT의 외주번역 내부 품질평가표

오류 유형		관련성	
	코드	낮음	높음
오역(mistranslation) + 부당한 추가	SENS		
부당한 누락 또는 미번역	OM		
부정확하거나 일관성없는 EU 용례 또는 용어 사용	TERM		
참고문서/자료 미사용; 규범집 또는 업무 특수적 지시사항 미준수	RD		
명확성(clarity), 어역(register) 및 텍스트유형 관습	CL		
문법	GR		
구두점	PT		
철자	SP		

외주번역 샘플은 담당 인하우스 번역가의 품질평가표상 기재된 표시에 따라 점수가 계산되어 '동적 등급 부여 체계(dynamic ranking system)'에 반영되어 계약자에게 피드백되며, 해당 등급은 매월 갱신되어 향후 번역 발주 시 순위로 적용된다. DGT는 언어 조합('로트') 별로 1개의 계약자[15]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

14) '높은 관련성' 오류는 이전에는 '의미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오류'로 정의됐으나, 현재는 '텍스트의 의도된 목적상 사용가능성(usability)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오류'로 정의된다(Strandvik 2017: 131).

15) DGT와 CJEU는 입찰에 참여하여 외주번역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번역서비스 제공자를, 공공기관(public entity)을 포함하여 EU 시민이거나 EU에 거주/등록하고 있는 모든 자연인, 법인 및 자연인/법인 그룹으로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즉, 상업 에이전시와 같은 법인 외에 개별 번역가(그룹)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DGT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제공자를 '사업자(economic operator)'로 정의한다(DGT 2023b).

개의 번역서비스제공자(TSP)를 순위에 따라 계약자로 선정한 뒤, 최고 순위자에게 작업을 먼저 제안하고, 최고 순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연쇄적으로 작업을 배정하는 '연쇄 계약방식(cascade type of contracts)'을 적용한다. 등급 부여를 위한 품질평가는 0~100%의 점수를 기준으로, 해당 작업이 '납품된 상태 그대로 사용가능하며, DGT의 추가 개입 없이 공개 가능한 상태'인 경우 100%가 부여된다. 즉, 계약자에 대한 월별 외주번역 품질평가는 직전 월에 납품된 평가 페이지의 품질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월별 평가점수 결과가 85% 미만인 경우, 최초 발생 시에는 해당 월에 대한 계약상 보수율의 15%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9개월 이내 2차 발생 시에는 30%를, 9개월 이내 3차 발생 시에는 50%를 감액할 뿐 아니라 계약을 해지한다. 또한 20%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 보수율의 8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인 품질보장을 도모하고 있다(DGT 2023c).

CJEU 역시 DGT와 마찬가지로, 명세서상 품질 요건의 준수를 대금 지급을 위한 계약상 의무일 뿐 아니라, 계약자의 평가와 연계된 핵심 요소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 기본계약(FWC)에서 SL에 대한 철저한 지식, TL 및 TL 법률용어에 대한 완벽한 구사력, 관련 전문 경험 및 적절한 IT 기술역량을 계약의 주제(subject matter)로 규정하고 있다. CJEU의 경우 FWC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1년씩 총 3회에 걸쳐 갱신 가능하므로, DGT와 마찬가지로 4년마다 새로운 입찰을 실시한다. 또한, DGT와 동일하게 '연쇄 계약방식'을 채택하여, 로트 별로 계약자의 생산능력과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특정 작업 배정을 제안할 순서를 결정한다. 그러나 DGT와 달리 낙찰 후에도 로트별 최대 계약자 수[16]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찰 신청을 허용하기 때문에, 작업 배정 순서는 신규 FWC 체결자들을 반영하여 계속하여 조정된다(CJEU 2023b). 또한, 작업 배정 순서 조정을 위한 품질평가 기준은 입찰명세서상 규정된 품질요건(표 3)이지만, DGT와 달리 납품된 외주번역의 일부를 샘플링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전체에 대한 내부 법률언어전문가의 감수에 기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CJEU의 경우 판결문(court rulings) 번역의 외주 진행 시, 기본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이중언어 및 단일언어 감수를 실시했더라도 외주번역된 전체 텍스트에 대해 내부의 추가 이중언어 감수를 시행한다(Strandvik 2017: 127-128).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16) 일례로, 2023년 입찰공고(2023/S031-089998)상 불어-아일랜드어 로트에 대한 최대 계약자 수는 50이다.

정본인 판례 번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관이 비용효율성보다 리스크 최소화를 우선시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특정 작업이 FWC 상 품질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비관리(preliminary control) 대상으로 계약자에게 서면 통보되며, 60일간 대금 지급이 정지된다. 예비관리 대상이 된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 평가를 실시하여 품질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대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발주서에 규정된 납품기한 미준수 시에도 계약자가 지연일 당 대금 총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번역품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CJEU 2023b).

2.2. EU 번역기관 입찰명세서의 입찰평가 기준

2.2.1. DGT: TRAD-23

이제부터는 DGT의 2023년 최신 입찰명세서의 구성항목과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입찰평가 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대상은 TRAD-23 체결을 위한 DGT의 입찰공고[17]를 위한 입찰명세서로, 해당 명세서는 계약의 주제, 대상서비스의 종류와 품질기준, 계약이행 관련 사항, 입찰 참여방법, 입찰평가 등 총 5개 부(Part)로 구성되어 있다(표 5 참조). DGT는 제5부의 입찰평가와 관련하여, 먼저 유럽연합 공무원인 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찰절차 참여를 배제하고, 법률상 기준 및 최소 생산 역량, 전문 역량에 부합하는 입찰자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품질/가격 비율에 근거한 낙찰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겨, 순위별로 입찰자를 낙찰한다. 후보자 선정 기준 가운데 법률상 기준은 유럽연합조약(TE) 등에 따른 유럽연합 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이며, 최소 생산 역량은 1) 산출량 기준으로, 2022년 해당 로트에 대해 번역, 감수, 납품한 페이지 수가 DGT에서 정한 로트별 페이지 수 이상, 2) 인력 수 기준으로 해당 로트에 대해 2020~23년 동안의 연평균 관리인력 수가 DGT가 정한 로트별 물량의 30%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숫자여야 한다. 전문역량은 하수급인[18]을 포함한 관련 인력의 상기 <표 1>에 제시된 자격

17) DGT는 현재 진행 중인 외주번역을 위한 기본계약인 TRAD-19가 2024년 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유효한 기본계약인 TRAD-23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DGT/LUX/2023/OP/0010)를 2023년 2월 게시하였다.

요건 충족을 의미한다.

표 5. DGT 외주번역 입찰명세서 주요 구성항목

구분	구성항목
1. 계약의 주제	계약의 주제, 법적 근거, 정의
2. 대상서비스	제공 대상 서비스, 품질기준, 작업물량 및 언어조합(로트)
3. 기본계약의 이행	품질관리 방안, 작업평가, 월별 품질평가, 저품질 번역에 대한 대금 감액, 작업 배정방식, 납품기한, 송장 발행, 비밀유지, 민감한 작업 관련 규정, 의사소통
4. 입찰 참여방법	입찰참가자격, 최소 참가 기준, 공동 입찰 참가방법, 하도급, 입찰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기술입찰서, 금액입찰서
5. 입찰 평가	배제기준, 증빙자료, 선정 기준(법적 역량, 최소 생산 역량, 전문역량), 낙찰 기준(언어테스트, 프로젝트 관리 테스트, 대금, 기본계약 체결)

구체적인 낙찰 기준을 살펴보면, 입찰 순위 평가는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품질에 70%, 가격에 30%의 가중치를 둔다. 품질은 언어테스트와 프로젝트관리 테스트의 2가지 테스트로 평가하며, 프로젝트관리 테스트의 경우 언어테스트에서 합격점수(56점)를 획득한 경우에만 실시한다[19]. 언어테스트는 EU 관련 주제에 대한 4페이지 분량의 부분 번역 텍스트로, 입찰자는 텍스트의 미번역 부분을 번역하고 최종 번역본 전체를 이중언어 감수하여 납품 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SDLXLIFF 및 Word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관리 테스트는 번역작업 공정과 관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Word 파일로 제출한다. 로트별로 가장 우수한 품질/가격 비율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낙찰되며, 2개 이상의 입찰이 동일 비율인 경우에는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에 더 높은 순위가 부여되고, 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입찰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DGT의 경우, 언어테스트 품질도 중요 평가 기준이지만, 입찰자의 상시적인 아웃소싱 번역품질 보증 방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관리 테스트를 두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18) DGT는 입찰자의 FWC 이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 부담을 전제로 하도급을 허용하고, 단독입찰자 또는 공동입찰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동일 로트에 대한 다른 입찰자의 하수급인이 될 수도 있다.

19) 각 시험은 2명의 DGT 평가자가 실시하며, 두 평가 결과의 평균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 결과 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세 번째 평가가 실시되며, 최종점수는 세 평가의 평균으로 한다. 가중치를 반영한 프로젝트관리 테스트의 합격 점수는 14점이다.

2.2.2. CJEU: COJ-PROC-23/005

다음으로 CJEU의 2023년 최신 외주번역 입찰공고[20]상 입찰명세서의 낙찰 기준을 분석해 본다. CJEU의 입찰명세서는 1) 계약기관, 2) 계약 관련 사항, 3) 입찰서 제출 관련 사항, 4) 입찰평가, 5) 특정 조건 관련 항목들로 구성되며, DGT의 경우와 항목 구성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CJEU의 경우에도 DGT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며, 일정한 참가 조건을 충족하는 입찰자들이 제출한 기술제안서(테스트번역)와 가격제안서(입찰가격)를 평가하여 품질/가격 비율 면에서 최고의 가성비(best-value-for-money)를 제공하는 입찰자 순위별로 로트당 최대 계약자 수를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낙찰기준은 DGT와 동일하게 품질에 70%, 가격에 30%의 가중치를 부여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품질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성비 기준을 적용한다[21]. 즉, 테스트번역의 품질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해당 입찰은 가격제안서를 평가하지 않고 거부된다. 또한 입찰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에도 입찰이 거부될 수 있다. 아래 <표 6>은 CJEU 입찰명세서상 제시된 테스트번역의 최소 품질기준으로, 법률번역의 3가지 품질지표인 정확성과 일관성, 명확성이 망라되어 있으며, 법률문서의 상호텍스트성을 고려한 관련 문서 인용의 정확성과 일관성 준수가 '방법론적 측면'으로 적시되고 있다.

표 6. CJEU의 테스트번역 최소 품질기준

법적 측면	언어적 측면	방법론적 측면
·원본에 대한 이해와 충실한 번역 ·정확성 및 용어일관성	·정확성 및 용어일관성 ·맞춤법 및 구문 ·명확성(clarity) 및/또는 어역(register)	·문서의 인용 및 연구 ·완성도(completeness)

아울러, 한국의 법률번역 기관들이 참고할만한 항목으로 CJEU의 외주번역 기본계약에 제시된 계약자 대금 지급 요율을 소개한다. 제도 법률번역의 특성상 외주번역가들이 텍스트 전체를 번역하는 대신, 기존에 이미 일부가 번역되어 있거

20) 동 입찰공고(2023/S031-089998)는 2023년 2월 게시된 '유럽연합의 공식언어에서 아일랜드어로 법률문서를 번역하기 위한 기본계약 체결' 공고이다.

21) 구체적인 가격/품질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입찰 X의 비율 = 입찰 최저가격/입찰 X의 가격 × 가격에 대한 가중치(30%) + 입찰 X의 품질점수(100점 만점) / 입찰 최고품질 × 품질에 대한 가중치(70%)

나 짧고 분절된 텍스트의 일부를 번역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번역되거나 반복되는 세그먼트에 대한 EU 번역기관들의 지급 요율 결정은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CJEU는 기번역 세그먼트 비율이 65%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그먼트에 대한 100% 요율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번역 맥락의 확인이나 납품 전 자가감수와 같은 고품질 번역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 작업방식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cf. Strandvik 2018: 60).

표 7. CJEU의 기본계약에 따른 계약자 대금 지급 요율[22)]

구분	사전 번역되거나 반복되는 비율
기본요율	ST 의 표준 페이지[23)] 수에 로트별 표준 페이지당 가격을 곱한 금액
세그먼트 요율	100% 사전 번역되거나 100% 반복: 세그먼트 기재 문자의 20%
	82% 이상 100% 미만: 세그먼트 기재 문자의 30%
	65% 이상 82% 미만: 세그먼트 기재 문자의 50%
	65% 미만: 세그먼트 기재 문자의 100%

3. 한국 법률번역기관 입찰명세서 분석

3.1. 분석 방법

이제부터는 상기와 같이 살펴본 DGT와 CJEU의 외주번역 품질보증 정책 및 입찰명세서 평가기준을, 한국의 주요 법률번역기관의 입찰명세서의 경우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본고에서 제도 법률번역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의 예산 지원 하에 상시적이거나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법률번역으로 정의된다. 이에 본고는 한국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법률텍스트의 외주번역을 위한 입찰공고의 입찰명세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24)].

22) DGT(2023: 28)의 경우 전처리된 번역작업에 대한 보수율은 100% 일치 페이지의 경우 기준가격의 20%, 85~99% 일치 페이지의 경우 50%, 85% 미만 일치 페이지의 경우 100%이며, 이중언어 감수(revision) 및 단일언어 감수(review) 작업 보수율은 ST 표준 페이지 수의 50%로 계산한다.

23) 표준 페이지는 SL기준으로 공백을 제외한 1,500자의 텍스트 페이지를 말하며, 표준 페이지 수는 재판소의 승인부서가 결정한다(CJEU 2023b).

이를 위해 먼저 2018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가종합 전자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에서 '번역'을 검색어로 용역입찰공고를 검색한 뒤, 텍스트 유형상 법률번역에 해당하는 공고들을 도출하였다. 이 가운데 2023년 8월 공고된 법제처의 '대한민국 법제발전사 영문번역'과 같이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번역의 경우는 제외하고, 동일한 성격 또는 제목의 사업에 대하여 대상 기간 중 최소 3회 이상 반복하여 게시된 입찰공고를 대상으로, 외주번역 명세서에 해당하는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입수했다. 동일한 수요기관이 작성한 동일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의 경우 연도별로 항목별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으나, 동 연구의 목적이 기관별 외주번역 입찰명세서의 통시적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지 않으므로 EU 번역기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 사업에 대해 입수가능한 최신 입찰공고의 명세서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 8>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선별한 5개 번역기관의 최신 입찰공고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8. 분석 대상 입찰공고 분류

수요기관	입찰공고 명	입찰공고번호
한국법령정보원	2023 년 하반기 세계법제정보센터 외주번역사업	20230734775 - 00
서울특별시	2023년 상반기 자치법규 외국어(영문·중문) 전문번역 및 감수 용역	20230518286 - 00
헌법재판소	2023년도 헌법재판소 외국 헌법 재판자료 번역사업	20230411705 - 00
국회도서관	2023년도 외국법률 번역사업	20230107162 - 00
금융위원회	금융법규 영문번역 및 감수	20220900327 - 00

분석대상으로 삼은 한국법령정보원 외주번역 입찰공고는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시되는 11개 언어(2023년 하반기의 경우)의 외국 현행 법령을 한국의 중소·영세 기업 등에 한국어로 번역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및 감수 용역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외국인 등에게 서울시의 자치법규를 영어 및 중국어 번역으로 제공하여 편의 제공 및 서울시 홍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외국 헌법 재판자료 번역사업은 헌법재판과 관련된 외국의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으로, 일반 국민이 아닌 헌법

24) 한국 정부기관의 입찰명세서 구성항목을 살펴본 선행연구로 박지영(2016)이 있다. 해당 연구는 장르를 불문하고 정부기관이 발주한 일정 시기의 모든 번역 용역 입찰의 명세서 항목을 분석하여 고객인 기관의 니즈를 분석하였다.

재판소 재판관, 재판연구원 등 법률가들을 최종사용자로 한다. 국회도서관 외국법률 번역사업의 경우 국회의원의 입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법률을 한글로 번역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 담당자들을 최종사용자로 한다[25]. 금융위원회 금융법규 영문번역 사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등을 의도된 수신자로 하여, 한국 금융법규의 영어 번역 제공을 통해 금융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6]. 상기와 같은 5개 번역기관의 입찰명세서에 제시된 구성요소, 품질요건, 평가방식 및 기준 등을 EU 번역기관과 비교·분석하여 개선점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3.2. 분석 결과

3.2.1. 명세서 항목

먼저 5개 기관의 입찰명세서에 기재된 주요 구성항목 및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입찰은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세서(제안요청서)의 주요 항목 및 낙찰자 선정 방식 모두 유사하다. 공통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1) 사업내용, 기간, 예산 등 사업개요, 2) 입찰 참가 자격 및 제안 사항 등의 제안 사항,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4) 제안서 제출 및 평가방법, 5) 제안서 관련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9 참조). 입찰 방법 또한 5개 기관 모두 '제한경쟁입찰',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채택하여, 입찰자들이 제출한 제안서 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협상적격자)를 선정한 뒤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입찰 참가 자격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세법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규정되어, EU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원칙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연인(그룹) 등도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EU 번역기관들과 달리,

25) 그러나 제도 법률번역의 특성인 '공공성'으로 인해 해당 번역 또한 일반에 공개되므로 일반 국민이 의도되지 않은 수신자(Scott 2019: 21)가 될 수도 있다.

26) 사업 금액 면으로는 국회도서관 번역사업이 연간 4억원 이상으로 가장 크며, 법령정보원의 번역사업이 연간 3억원 이상, 서울시 자치법규 번역사업이 연간 8천만원 이상, 헌법재판소와 금융위원회의 경우 연간 3~4천만원 정도 규모이다.

27)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이다.

5개 대상기관 모두 '법률적 통일성과 전문성의 필요성'을 이유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고 계약자의 단독이행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표 9. 분석대상 기관 외주번역 입찰명세서 공통 구성항목

구분	구성항목
1. 사업(과업) 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및 번역 대상, 추진방법(입찰 및 계약 방법), 진행 일정, 대가 지급 방법
2. 제안(요청) 사항	자격요건, 기본 사항(지침), 일반 사항(지침), 세부 사항(지침)
3.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입찰 참가자격, 사업자 선정방식, 제안설명회, 제안서 평가, 협상 방법 및 기준,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4. 제안서 관련 사항	제안서 제출, 제안서 효력, 규격 및 유의사항, 작성지침
5.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번역 시안용 샘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여 인력 현황, 관련 분야 실적, 서약서 등

검토가 필요한 대목은 외주번역 계약기간 및 방식이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GT와 CJEU의 경우 매년 입찰을 실시하는 대신 최장 4년의 기간 동안 '연쇄계약' 방식을 사용하여 다수의 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기적인 품질평가를 통해 우선 제안 계약자 순위를 계속해서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한국 대상기관들의 경우 분기별로, 또는 매년 신규 입찰을 실시하여 단일 계약자를 선정하며, 기존 계약자도 매번 신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28] 이러한 방식은 업체 간 동등한 기회 보장 및 객관성 확보의 명분이 되고, 기관 입장에서는 단일 계약자로 관리 대상을 일원화하여 행정 편의를 도모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일 내용의 입찰을 위해 매번 외부 평가자들을 동원하여 평가를 실시하는데 따른 예산 낭비가 크고, 해당 작업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에이전시 및 번역가들이 매번 교체되어 동일한 성격의 문서에 대한 용어, 스타일상 일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업체들이 실제 번역 품질확보 및 개선보다는 당장의 입찰 프리젠테이션 준비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기관의 행정편의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EU 번역기관들에 준하여 연장 가능한 장기 계약을 체결하되, 복수의 계약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품질평가를 통해 작업 배정 순위 및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고 본다.

28) 법령정보원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차례 외주번역 입찰을 실시하고, 나머지 분석 대상 기관들은 매년 1차례 입찰을 실시한다.

3.2.2. 품질 요건

3.2.2.1. 언어적 요건

다음으로, 분석대상 입찰명세서상 기재된 품질요건을 DGT와 CJEU의 경우와 비교하여, 1) 언어적 요건, 2) 기술적 요건 및 IT 요건, 3) 전문인력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언어적 품질요건은 명세서에 따라 '과업수행기준'이나 '세부 번역 및 감수 지침', '결과물 납품시 점검사항' 등의 소제목을 사용하고 있으나, 내용상 모두 번역결과물 품질지표로 분류될 수 있는 언어적 품질요건에 해당한다. 확인 결과, 국회도서관의 경우만 정확성, 가독성 등 품질지표 항목 분류 없이 품질요건이 나열되어 있고[29], 법령정보원, 서울특별시, 헌법재판소, 금융위원회의 경우 모든 품질지표 및 세부 요건이 거의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었다. 즉, 법령정보원의 경우 '용어집' 항목이 별도 지표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표 10 참조), 4개 기관이 모두 '정확성', '어문규정', '가독성', '기능적 적합성'을 품질지표로 명시하고 세부 내용 또한 거의 유사했다(표 11 참조). 이는 기관별로 내부에서 합의된 품질기준에 따라 번역의 목적과 수신자에 맞추어 아웃소싱 품질요건을 제시하기보다는, 그간 나라장터에 게시된 타 기관의 법률번역 입찰명세서상 품질요건을 무비판적으로 서로 참고하는 한국 번역기관의 관행을 짐작하게 한다.

제시된 언어적 품질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확성' 지표로는 ST 내용의 왜곡이나 누락 금지, 용어 일관성, 전문용어 및 기관명, 법률명 등의 정확한 사용이 규정되고, '어문규정' 지표로는 맞춤법 등 한글 어문규정의 준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준수와 번역투의 사용금지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가독성' 지표로 문장길이의 적절성과 자연스러운 표현 사용이, '기능적 적합성' 지표로는 번역문의 용도 및 최종 이용자를 감안한 적절한 문체 사용 및 명확한 표현 사용 등이 규정되고 있다. 법령정보원의 경우 '용어집'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여, 계약자의 최종 번역본 용어집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만 나머지 기관들과 차이가 있었다.

29) 1) 원본과 번역본의 수량 및 내용 일치 여부, 2) 한글 어문규정 준수 여부,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준수 여부, 4) 법률 전문용어의 적절성 여부, 5) 용어의 일관성 및 통일성 여부, 6) 법률명, 기관명, 고유명사 등의 적절성 여부, 7) 가독성 및 명확한 용어 사용 여부

표 10. 한국법령정보원 입찰명세서의 언어적 품질요건

구분	주요 사항
정확성	▪ 원문의 메시지가 왜곡, 누락되지 않고 정확히 번역되었는지 여부 (번역자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 동일 용어에 대한 일관성·통일성 여부 ▪ 해당 분야의 전문 용어 사용 여부 ▪ 숫자, 고유명사, 기관명, 법률명 등의 확인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준수 ▪ 표준어 규정 준수 ▪ 외래어 표기법 준수 ▪ 로마자 표기법 준수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수 ▪ 오·탈자가 없도록 유의 ▪ 한글에 없는 번역투 사용 금지(예: 수동태, 진행형, 복수형, ‘그리고’ 및 ‘~의’ 남발) 등
용어집	▪ 고유명사(기관명), 전문용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번역 작업 시, 번역용어집에 기록 및 업데이트 필수
가독성	▪ 문장 길이의 적절성 여부 ▪ 일반인이 읽어도 내용 이해에 무리가 없는 가독성 확보 (직역이 아닌 자연스러운 표현 사용) 여부
기능적 적합성	▪ 번역문의 용도 및 최종 이용자를 감안한 적절한 문체 사용 여부 ▪ 모호한 표현 자제, 명확한 표현 사용 여부 등

표 11. 헌법재판소 입찰명세서의 언어적 품질요건

구분	주요 사항
정확성	▪ 원문의 메시지가 왜곡, 누락되지 않고 정확히 번역되었는지 여부 ▪ 동일 용어에 대한 일관성·통일성 여부 ▪ 해당 분야의 전문용어 사용 여부 ▪ 기관명, 고유명사, 법률명 등 명칭의 정확성 확인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준수 ▪ 표준어 규정 준수 ▪ 외래어 표기법 준수 ▪ 로마자 표기법 준수 ▪ 번역투 등 어색한 표현 사용 금지(예: 수동태, 진행형, 복수형, ‘그리고’ 및 ‘~의’ 남용) 등
가독성	▪ 문장 길이의 적절성 여부 ▪ 자연스러운 표현을 통한 정확한 의미 전달 여부
기능적 적합성	▪ 번역문의 용도 및 최종 이용자를 감안한 적절한 문체 사용 여부 ▪ 모호한 표현 자제, 명확한 표현 사용 여부 등

그러나 상기와 같은 품질지표는 법률번역의 핵심 품질지표인 '정확성', '일관성', '명확성' 지표가 누락되거나 기준 없이 혼합되어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정확성' 지표로 제시된 '메시지의 누락 금지'는 정확성 지표를 구성하는 완전성(completeness), 즉 부당한 생략이나 추가 금지에 해당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용어 사용'이나 '기관명 등 명칭의 정확성 확인' 역시 정확한 TL 용어 사용에 해당하여 법률번역의 정확성 항목에 배치되어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동일 용어에 대한 통일성 여부'의 경우 '정확성'이 아닌 '일관성'에 해당하는데, 대상 명세서들의 경우 '일관성' 지표 대신 '어문규정'이 제시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어문규정 준수는 일관성 지표를 구성하는 하위 사항에 불과하므로 일관성 지표 하에 세부 항목으로 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번역의 '합목적성'으로 볼 수 있는 '기능적 적합성'의 경우 '정확성'이나 '가독성' 같은 품질지표로 분류되기보다는 품질목표나 정의에 해당하며, 세부 항목으로 제시된 '적절한 문체 사용'이나 '모호한 표현 자제' 등은 법률번역의 '명확성' 기준에 해당하여 분류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다음으로, '가독성'으로 명시된 지표 또한 기관의 번역 목적에 맞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EU 번역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률번역 기관들은 품질지표로 '가독성'이 아닌 '명확성'을 사용하는데, 이는 독자에게 애매성(ambiguity)이 없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가독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유정주 2023a: 52). 일례로 <표 10>의 법령정보원 외주번역의 경우, 의도된 수신자가 한국의 중소기업 종사자 등 일반 국민이므로, 일반인의 명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가독성을 명확성 지표로 제시하여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표 11>과 같은 헌법재판소 외국 헌법 재판자료의 경우 헌법재판관 등을 주요 수신자로 하므로, 가독성보다는 해석상 애매성을 발생시키지 않는 명확성 지표 제시가 권장된다. 따라서 '적절한 문체 사용'이나 '모호한[30] 표현 자제' 같은 항목은 '명확성' 지표로 제시하되, 해당 번역의 목적 및 용도, 최종이용자 등은 별도의 명세서 항목으로 상세히 기술하여 향후 계약자의 번역 의사결정을 돕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문규정' 지표로 분류된 '번역투 등 어색한 표현 사용 금지' 항목 또한 가독성 관련 내용에 해당하여, '명확성' 지표에 배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언어적 품질지표 자체의 문제점 외에 눈에 띄는 사항은 제도 법률번역의 품질

30) '모호성(vagueness)'은 법적 비결정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법문 자체에 의도된 경우가 많아 번역가의 해석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률번역의 품질과 관련한 '명확성' 지표를 구성하는 것은 어휘적, 구조적 '애매성(ambigutiy)' 차원이다(유정주 2012: 111-113).

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지목되는 일관성 달성 요건이 최소한의 형식적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대상 기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과의 일치 등은 법률번역만이 아닌 모든 장르의 외주번역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일관성 요건에 불과하며, 법률번역의 경우 DGT나 CJEU의 사례와 같이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발생가능한 다양한 일관성 차원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번역기관이 상세한 지침이나 참고 문서들을 계약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석대상 번역기관들의 경우 내부 지침의 미비로 인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거나[31], 심지어 국회도서관이나 헌법재판소의 경우 이를 계약자가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32]. 상호참조 관련 자료, 이전 번역본, 기관의 스타일가이드, 승인된 용어집, 기관명, 관련 웹사이트 등의 참고자료는 법률번역 아웃소싱의 번역브리프를 구성하는 필수요소로, 계약자가 아닌 의뢰인(번역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항목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Scott 2019: 100).

3.2.2.2. 기술 및 장비 요건

다음으로, 입찰명세서상 기재된 품질요건 가운데 기술적 품질요건 및 IT 등 장비관련 요건을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GT와 CJEU의 경우 합의된 마감기한 준수 및 ST 서식 등 디자인 요건 준수, SDL XLIFF같은 기관 내 CAT 툴 파일 형식 납품, 용어데이터베이스 납품 등을 주요 기술 및 장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분석대상 명세서의 경우 마감기한 준수 및 발주기관이 요청한 양식 및 서식 준수 요건 외에 번역메모리 형식의 납품을 별도 규정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12 참조). 이는, 분석대상 기관들의 경우 내부에 번역 전담 부서 없이 최소한의 관리인력만 두고 있거나, 번역팀이 존재하더라도 법률번역은 아웃소싱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별도의 내부 CAT 툴을 운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경우 내부 감수를 강화하여 납품 기한 내 제출 외에

31) 금융위원회의 경우 '법령제명, 법령용어 등은 법제처 법령용어한영사전 및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영문제명 및 법령용어한영사전을 기준으로 통일하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상위) 법령을 참고'하도록 규정하여, 분석대상 명세서 가운데 가장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검색결과, 해당 기준은 법제처의 2013년 '국정과제 등 관련 법령 영문 번역' 입찰의 제안요청서 문구와 동일하여, 기관들이 법령 영역 일관성 품질요건으로 법제처의 기존 입찰명세서를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DGT Quality Management Framework(DGT 2014)은 외주번역가들에게 번역브리프와 탬플릿, 참고자료와 번역메모리, 용어집과 피드백을 모두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Sirovec 2020: 201).

월 1회 이상 진행 중인 번역결과물을 제출하여 내부 피드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서울시의 경우 요청 시 최종본 외에도 단계별 감수본 등을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 내부의 결과물 품질 검증 강화가 시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용어집의 경우 법령정보원과 국회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용어집은 정기적으로 법률번역을 발주하는 분석대상 기관들의 '일관성' 품질지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GT의 경우 법령 등의 외주번역시 신규 용어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 알리고 처리 여부를 상의하도록 규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용어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한국은 EU 기관들과 달리 IATE와 같이 검증을 거친 기관 공통 용어데이터베이스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 내 기번역 용어들과의 일관성 달성은 최소한의 제도 법률번역 품질보장을 위한 요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 대상 기관들의 경우 매년 또는 분기별로 신규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변경하기 때문에, 신규

표 12. 분석대상 입찰명세서의 기술 및 장비 관련 품질요건

발주기관	기술적 요건 및 장비 요건
한국법령정보원	·지정 기한 내에 워드파일(번역문 및 원문의 2 단 편집본)로 번역결과물 납품. 도표, 수식이 있는 경우 원문과 유사한 형태 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형태로 편집 ·납품 시 번역결과물의 목록, 번역용어집, 과업수행 참여자 명단을 엑셀파일로 함께 제출
서울특별시	·산출물은 아래아 한글파일(건별)로 제출하며, 제출 시 번역자, 원어민 감수자, 데스크급 감수자, 최종관리자의 실명 기재 ·발주부서 요청 시 번역본, 언어민 감수본, 데스크급 감수자의 감수본, 최종본 등 단계별 파일로 제출
헌법재판소	·과업 완료 시까지 월 1회 이상 현재 진행 중인 번역 결과물을 제출 ·발주기관 요청 양식 및 서식 준수(원문의 하이퍼링크, 책갈피 등 기능 유지)
국회도서관	·긴급 번역 요구 시 주관부서의 요구 기한 내 번역 ·결과물 납품은 워드파일로 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편집양식에 따라 제출. 사업완료 후 용어집 납품 ·납품시 번역자 및 검토자의 성명, 이력서, 검토결과를 함께 제출
금융위원회	·결과물은 원본 전자파일 및 번역물 CD 2장으로 제출하며, 납품 시 번역자 및 감수자의 성명, 이력서, 감수결과를 함께 제출 ·감수의 용이성을 위해 문단별로 해당 페이지를 표시한 표를 작성하여, 왼쪽표엔 한글, 오른쪽 표엔 번역어를 작성해 제출

계약자에게 검증된 기존 번역용어들을 정리한 용어집을 제공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새롭게 발생한 용어들을 제출받아 내부 검증을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용어집으로 수립함으로써 제도번역의 표준화 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2.2.3. 전문인력 요건

다음으로, 분석대상 입찰명세서 품질요건 가운데 번역가, 감수자 등 인력 관련 요건을 살펴본다. 상기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DGT와 CJEU의 경우 법률번역 외주번역 시 이중언어 및 단일언어 감수 후 납품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번역가 요건과 감수자 요건을 모두 제시한다[33]. 한국의 경우에도 법령정보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기관들은 번역자와 감수자를 참여 인력으로 명시하고, 번역자와 감수자에 동일하거나 별도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표 13 참조). 또한 모든 기관들이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이 아닌 제3자가 번역을 수행하여 결과물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번역 및 감수에 참여한 작업자를 산출물 제출 시 명시하도록 하는 '작업자 실명제'를 규정하고, 참여 인력 변경 시 사전에 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ISO 국제표준에 따라 구체적인 학위 및 경력 요건을 규정하는 EU 기관들과 달리, 분석기관들은 '영어에 능통하고 법률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와 같이 모호한 요건을 제시하거나(헌법재판소, 금융위원회), 명시적인 학위 요건을 두지 않거나(서울특별시, 헌법재판소, 금융위원회), 경력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헌법재판소, 금융위원회)가 다수여서, 해당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법률번역 전문 국제표준인 ISO 20771은 법률번역가 및 이중언어 감수자(reviser), 단일언어 감수자(reviewer)[34]의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학위 및 경력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번역가 및 이중언어 감수자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단일언어 감수자는 별도의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유정주 2023b: 106). 따라서 한국의 법률번역 기관들도 ISO 20771 등 관련 표준에 준하여, 외주번역 인력 품질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품질보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3) CJEU의 경우 입찰명세서상 별도의 감수자 요건을 명시하지 않지만, 번역 및 감수를 모두 수행하는 상근 법률언어전문가 자격요건에 준하여 외부번역가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부 감수자 역시 번역가 요건과 동일한 법률언어전문가 요건을 부과한다고 볼 수 있다.

34) ISO 20771의 경우, 정보제공 목적의 법률번역이라 하더라도 공식 문서 형식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에는 이중언어 감수 후 단일언어 감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권고한다(유정주 2023b: 104).

표 13. 분석대상 입찰명세서의 인력 품질요건

발주기관	전문인력 요건
한국법령정보원	·11개 언어에 대한 석·박사급 외국어 고급 능력을 갖춘 전문 번역사 (법률번역 업무 수행 경력 3년 이상)
서울특별시	·번역자: 최근 3년간 대한민국 법령 및 자치법규 영문·중문 번역을 단일 건으로 2천만원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통번역 전문가 ·감수자: 1) 원어민 감수자: 미국·영국 영어/ 중국어 표준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 2) 내국인 감수자: 대한민국 법령 및 자치법규 영문(한영)·중문(한중) 번역 경험이 풍부한 자
헌법재판소	·번역자: 원문의 의미와 형식을 충실하게 번역하고 분야별 전문용어를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전문인력 ·감수자: 별도의 감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최종 감수시 번역-감수자가 공동으로 교정작업을 수행할 것
국회도서관	·번역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번역자 그룹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검토 그룹으로 이원화된 조직체계를 갖출 것 ·번역자 및 검토자는 석·박사급 법학 전공자, 또는 외국어 고급 능력을 갖추고 외국 법률분야 번역 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인력이어야 함.
금융위원회	·번역 및 감수자는 영어에 능통하고 법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일 것. ·감수자는 해당 외국어 번역 경험 다수인 자로서, 신뢰할만한 경력을 가진 자로 우선 구성할 것.

또한 대상 기관들의 경우, 제안서 설명회 시 프로젝트관리자(PM)의 직접 발표를 명시한 것 외에, 별도의 프로젝트관리자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GT의 경우 외주번역의 핵심인력으로 기관과 번역자, 감수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PM의 자격요건을 입찰명세서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법률번역 기관들의 경우 내부번역팀의 부재로 납품된 외주번역 결과물을 외부 공개하기 전에 내부에서 추가 감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주계약자 PM의 법률번역 관련 전문 역량과 관리 능력이 품질보증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입찰 제안서에 첨부하는 참여인력 이력 사항에 번역자와 감수자 외에도 PM 이력을 별도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3.2.3. 평가방식 및 기준

마지막으로, 분석대상 기관들의 제안서 평가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 기관들은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또한,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방식 및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순위 결정방식 역시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시하고 있어, 5개 기관의 평가방식에 내용상 차이가 없었다. 제안서 평가방식은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100점을 만점으로 기술평가 점수 90점,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점으로 구성되며,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76.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에 80점을, 입찰가격 평가에 20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 기관들의 경우 법률번역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기술능력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35].

기술평가를 위한 항목 및 배점은 분석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일례로 금융위원회의 경우 1)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시안의 질적 수준 등 사업계획 부문이 총 25점, 2) 제안업체의 조직 현황, 재무구조, 인력관리, 사업수행 실적 등 업체 현황이 총 15점, 3) 번역 및 감수 공정의 적정성 등 사업공정이 15점, 4) 번역 및 감수 인력의 전문성 등 인력 부문이 20점, 4) 품질 문제 발생 시 사후 지원 능력 등 품질보증이 총 15점으로, 합계 9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참여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성(20점 또는 15점)과 번역 시안 평가(20점 또는 15점), 번역 및 감수공정의 적정성(15점), 사후 품질보증 능력(15점) 등으로, 기관들이 인력 품질요건 및 번역시안 품질 및 사후 관리 방안 등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품질 70%, 가격 30%의 가중치를 두는 DGT와 CJEU보다 기술평가 가중치가 높게 책정되어, 일견 품질에 절대적 중요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DGT와 CJEU의 경우 참여인력의 전문역량이나 업체의 사업수행 실적 등은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최소 전문 요건에 해당하며, 일정 요건을 통과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참가자의 경우 품질 70%, 가격 30%의 낙찰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이 가운데 품질(70%)은 전적으로 번역 시안을 통해서만 평가되거나(CJEU), 번역 시안(80점)과 프로젝트관리 테스트(20점)로 평가되므로(DGT), 한국의 낙찰기준에 비해 테스트번역의 품질에 절대적 가중치

35) 금융위원회는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능력평가 비율 상향 조정 사유로,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양질의 번역결과물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으로, 헌법 및 법률분야와 관련하여 풍부한 번역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의 정부기관은 모두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정형화된 방식으로 적용하여, 기술능력 평가 항목이 인력·조직·관리 기술, 사업수행계획, 수행실적, 재무구조, 사후관리 등으로 고정되어 있다. 또한,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 역시 30점[3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외주번역을 위한 용역과 기타 용역의 평가 항목 및 배점이 유사하고, 높은 결과물 품질이 요구되는 법률번역과 일반 번역의 평가 역시 유사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기관별로 정형화된 계약예규를 계약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4. 결론 및 제언

본고는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 환경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외주번역의 품질보증 관행을 법률번역 기관들의 입찰명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의 번역기관이자 대표적인 법률번역기관인 DGT와 CJEU의 외주번역 품질보증 방안을 입찰명세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한국 법률번역 기관들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국 법률번역 기관들이 외주번역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입찰명세서상 기재된 품질요건 등은 간략하고 형식적인 반면, 제안서의 형식과 관련한 요건은 지나치게 상세하여, 효과적인 번역명세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EU 번역기관들의 경우 명세서에 입찰 참여를 위한 절차적 사항 외에도, 계약의 주제, 해당 번역의 목적 및 언어적, 기술적, 인적 품질요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기관의 품질기준을 제공하는 번역브리프로서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번역의 목적, 의도된 수신자, TT의 지위 등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거나, 제시된 품질 요건 등도 해당 번역의 목적과 상관없이 서로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어, 계약자에게 유의미한 품질기준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도 법률번역에서 품질은 절대적 '충실성'의 달성이 아닌 제

36) 계약예규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분야별 배점 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기관별로 항목 구성이나 배점 상 차이가 매우 작다.

시된 '명세'의 충족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명세서상 품질 요건이 형식적으로 제시될 경우, 외주번역 품질에 대한 검증이나 품질평가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 언어적 품질 요건 가운데 일관성 요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일관성은 제도 법률번역의 핵심 결과물 품질 지표로서, 제도 법률번역의 목표인 '표준화' 달성을 위한 가장 긴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률번역 기관들이 DGT나 CJEU와 같이 계약이행 조건으로 상세한 일관성 관련 요건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부의 관련 지침 및 참고자료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번역지침, 스타일가이드, SL, TL 참고자료, 번역메모리, 용어집 등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현재와 같이 법률번역의 상호텍스트적 본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한 '어문규정' 준수 위주의 일관성 요건만을 규정하거나, 일관성 준수 대상을 계약자가 스스로 제시하도록 하는 관행이 개선되기 어렵다.

셋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종류의 용역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입찰 평가방식 및 사업 운용 방식 등을 기관의 번역 목적과 내부 역량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국의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기술평가 점수가 90점에 달하지만, 기술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번역결과물 품질에 해당하는 시안평가는 15점에서 20점 정도에 불과하고, 업체 현황이나 사업공정, 사후 지원 방안 등에 배점 항목이 분산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규모가 크고 수주 실적이 많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EU 기관들과 같이 업체 현황, 인력구성, 품질보증 방안 등은 협상적격자 선정 시에만 고려하고, 낙찰기준은 기관의 번역 목적 및 수신자 등을 고려한 결과물 품질평가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내부의 상근 번역팀이 부재하고 품질관리자 수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DGT와 CJEU 같이 상시적인 내부 평가를 통한 연쇄계약 방식을 적용하거나, 법인이 아닌 프리랜서 외주번역가를을 도급계약을 통해 내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매년, 매분기 신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품질 관련 불만 요소를 해소해 오고 있으나, 이는 예산 낭비를 야기할 뿐 아니라 참여 인력이 계속 변경됨으로써 법률번역의 핵심 품질 지표인 일관성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에이전시의 경우 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수준보다 낮은 번역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실력 있는 법률번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EU 기관

들과 같이 복수의 낙찰자를 선정해 장기의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인 품질평가를 통해 작업배정 물량과 순서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내부 역량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도번역에서 비용 및 관리의 효율성 문제가 전면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번역의 경우 품질을 훼손하는 효율성 추구는 유의미할 수 없다. EU 번역기관들이 법률문서의 외주번역 시 이중언어, 단일언어 감수까지 완료해 '즉시 공개 가능한' 수준의 번역을 납품받더라도 해당 번역 전체에 대한 내부의 이중언어 감수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은, 법률번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효율성을 희생하더라도 품질보장 절차를 강화한 사례에 해당한다. 본고의 논의 결과로 한국의 법률번역 기관들이 외주번역 품질보증 절차를 검토하고, 기관의 역량과 번역목적을 고려하여 관련 입찰 관행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박지영. (2016).「번역명세서 분석을 통한 번역 의뢰인의 니즈 고찰: 정부 기관의 번역명세서를 중심으로」.『통번역학연구』20(2): 1-26.

유정주. (2012).「법령어의 애매성과 번역가의 해석문제: 대한민국법령의 '등', '및', 가운뎃점(·)을 중심으로」.『번역학연구』13(5): 109-141.

유정주. (2023a).「한국의 제도 법률번역에 대한 고찰: 개념, 범주, 품질지표」.『번역학연구』24(1): 39-70.

유정주. (2023b).「한국의 제도 법률번역 품질보증모델 수립을 위한 예비 연구- ISO 20771 및 EU 번역기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통번역학연구』27(3): 95-129.

Biel, Ł. (2017). Quality in institutional EU translation: Parameters, policies and practices. In T. Svoboda, Ł. Biel, & K. Łoboda (eds.), *Quality Aspects in Institutional Translation*.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31-58.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2023a). Tender Procedure COJ-PROC-23/005 Tender Specifications (online) Retrieved from http: https://curia.europa.eu/jcms/jcms/Jo2_10741/en/ on 20 July 2023.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2023b). Tender Procedure COJ-PROC-23/005 Framework Contract for the Provision of Translation Services (online) Retrieved from https://curia.europa.eu/jcms/jcms/Jo2_10741/en/ on 20 July 2023.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DGT), European Commission. (2017). Translation Quality Info Sheets for Contractors (online) Retrieved from https://commission.europa.eu/system/files/2020-06/translation-resources-quality-infosheet_en.pdf. on 27 July 2023.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DGT), European Commission. (2023a). Management plan 2023 (online) Retrieved from https://commission.europa.eu/system/files/2023-05/dgt_mp_2023_en_0.pdf on 30 July 2023.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DGT), European Commission. (2023b). TRAD23 Tender specifications (online) Retrieved from https://etendering.ted.europa.eu/cft/cft-documents.html?cftId=13385. on 25 July 2023.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DGT), European Commission. (2023c). TRAD23 General info session PowerPoint slides (online) Retrieved from https://commission.europa.eu/calls-tender-european-commission/trad23_en. on 22 July 2023.

Drugan, J., Strandvik, I. and Vuorinen, E. (2018). Translation quality, quality management and agency: Principles and practice in the European Union institutions. In J. Moorkens, S. Castilho, F. Gaspari, and S. Doherty (eds.),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Machine Translation: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Vol 1. Berlin: Springer, 39-68.

ISO 17100:2015 (2015). Translation services－Requirements for translation services. Geneva: ISO. Retrieved from https://www.iso.org/standard/59149.html. on 10 February 2023.

ISO 20771:2020 (2020). Legal translation－Requirements. Geneva: ISO. Retrieved from https://www.iso.org/standard/69032.html. on 7 February 2023.

Koskinen, K. (2014). Institutional translation: The art of government by translation. *Perspectives* 22(4):

479-492.
Koźbiał, D. (2017). Two-tiered approach to quality assurance in legal translation at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In T. Svoboda, Ł. Biel, & K. Łoboda (eds.), *Quality Aspects in Institutional Translation*.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155−174.
Šarčević, S. (2018). Challenges to legal translators in institutional settings. In F. Prieto Ramos (ed.), *Institutional Translation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Enhancing Quality in Multilingual Legal Communication.* London: Bloomsbury, 9-24.
Scott, J. R. (2019). *Legal Translation Outsource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Sirovec, S. (2020). Achieving quality in outsourcing. *Babel* 66(2): 193−207.
Sosoni, V. (2011). Training translators to work for the EU institutions: luxury or necessity?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16: 77-108.
Strandvik, I. (2017). Evaluation of outsourced translations. State of play in the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DGT). In T. Svoboda, Ł. Biel, & K. Łoboda (eds.), *Quality Aspects in Institutional Translation*.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123-137.
Strandvik, I. (2018). Towards a more structured approach to quality assurance: DGT's quality journey. In F. Prieto Ramos (ed.), *Institutional Translation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Enhancing Quality in Multilingual Legal Communication.* London: Bloomsbury, 51-62.
Svoboda, T. (2017). Translation manuals and style guides as quality assurance indicators: The case of the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In T. Svoboda, Ł. Biel, & K. Łoboda (eds.), *Quality Aspects in Institutional Translation*.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75-107.

This paper was received on 23 October 2023; revised on 6 December 2023; and accepted on 20 December 2023.

Author's email address

jeongjuy@naver.com

About the author

Jeongju Yoo is a researcher at Handong Global University. She earned a PhD in Translation Studies from the GSTI of Ewha Womans University in 2016.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legal translation, legal translation assessment and pedagogy, and corpus linguistics as a methodology for translation studies.